

대전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1206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120617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1. 7 선고 2018가소9326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포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해

담당변호사 이용락

변론 종결 2020. 7. 23.

판결 선고 2020. 9. 10.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1. 7. 선고 2018가소932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2,357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69,86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 B은 1976. 12. 27. 포항시 남구 C 전 132m²(원래는 경북 영일군 D이었으나, 1995.

1. 1. 행정구역명 변경으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6.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경상북도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11. 9. 경상북도 공고 E로 지방도 F로 노선인정 공고를 하여 위 도로의 부지로 점유·사용하였다가 2004. 10. 14. 경상북도 공고 G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일부 노선 구간에 대하여 우회도로 개설을 이유로 한 도로사용폐지 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폐도 구간의 관리 주체가 경상북도에서 피고로 이관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위 도로사용폐지가 이루어진 이후로도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이용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7. 12. 31.자 상속을 원인으로 2004. 11. 3. H 앞으로 3/11 지분, 원고 및 I, J, K 앞으로 각 2/1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J 및 K 소유의 각 2/11 지분에 관하여는 2004. 10.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4. 11. 3.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H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원고, I, J, K(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도로로 제공하여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 등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사용 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2013. 5. 9.부터 2018. 5. 8.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부당이득금 중 원고의 지분 비율 $15/44(= \text{원고 명의의 지분 } 2/11 + \text{피상속인 H의 상속지분 } 7/44)$ 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주장 피고는, B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속받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도 제한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한 점, B이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나 보상 요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과거 일제 강점기부터 이미 도로로 제공되어 왔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토지가 지방도 F로 노선인정되기 전부터 도로로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구체적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년 이상 도로 부지로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적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520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피고의 소유권 취득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보상내역 등 그 취득절차를 관련된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미제출 사유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적법한 취득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므로 피고는 소제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의 임료 상당액에 관한 반환의무만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인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8. 5. 11.로부터 역산하여 5년을 초과한 2013. 5. 11. 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이므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 11.부터 2018. 5. 8.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득금 중 원고의 지분 비율 15/44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액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먼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인 '전'을 기준으로 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액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대로 '도로'를 기준으로 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액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576, 585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이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대한민국 또는 경상북도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당시 그 현황이 전이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은 그 현황인 '도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구체적인 부당이득액에 관하여 본다.

제1심 법원 감정인 L에 대한 임료감정축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인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2013. 5. 9.부터 2018. 5. 8.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임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3. 5. 9. ~ 2014. 5. 8.	100,300
2014. 5. 9. ~ 2015. 5. 8.	112,200
2015. 5. 9. ~ 2016. 5. 8.	113,500
2016. 5. 9. ~ 2017. 5. 8.	117,400
2017. 5. 9. ~ 2018. 5. 8.	121,40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 5. 11.부터 2018. 5. 8.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564,250원[= 99,750원(= 100,300원 × 363/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112,200원 + 113,500원 + 117,400원 + 121,400원]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64,250원 중 원고의 지분 비율 15/44에 해당하는 192,357원(= 564,250원 × 15/44)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매경

판사김혜령

판사박성수